

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사업 (종료) 안내문



서울시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종료 예정으로 사업 예산이 2021년 12월 이전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 신청을 늦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01 저공해 지원 사업내용

구분	지원 혜택 (※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액이 다름)
조기폐차 보조금	[총중량 3.5톤 미만] 상한액 300만원 한도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- 폐차후 차량기준가액의 70% 지원, 경유차 제외한 신차구매시 잔여 30% 지원
	[총중량 3.5톤 이상] 상한액 440만원 ~ 4,000만원
매연저감 장치부착	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% 지원 - 보조금 : 246만원~586만원 (자부담금 : 20만원 ~ 60만원)

※ 저소득층의 경우 조기 폐차시 보조금 10% 추가지원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전액지원

- 조기폐차 지원대상 서울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 차량
- 계절관리제(2020.12.~2021.3.)기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021.11.30.까지 저공해 조치시 과태료가 감면되오니 2021. 8.31. 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 필요 (저공해 조치 절차 2개월 이상 소요)

※ 문의: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☎2133-3653, 한국자동차환경협회(조기폐차 ☎1577-7121, 매연저감장치부착 ☎1544-0907)

02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(다산클래드 : 120)

구분	계절관리제 운행제한	수도권 공해차량 제한 지역 운행제한(LEZ)	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	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운행제한
제한 대상	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	수도권 등록 5등급 경우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	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	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
제한 지역	서울시 전역	서울시 전역	한양도성내 (종로, 중구 15개 동)	서울시 전역
제한 시간	매년 12월~3월 평일 6시 ~21시(토·공휴일 제외)	매년 4월~11월 매일 24시간	365일 매일 6시 ~21시	비상저감조치 시행일 평일 6시 ~21시(토·공휴일 제외)
제외 대상	- 긴급차량,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(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) - 장치부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		- 긴급차량,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(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)	- 긴급차량,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(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)
한시 유예 대상	-	- 저공해명령후 6개월 이내 - 매연농도 10%이하 차량 - 장치 부착 불가차량	-	-
과태료	1일 1회, 10만원 ※ '21.11.30. 까지 조기폐차, DPF 부착 시 과태료 부과취소 및 납부금액 환급	- 1회 경고 - 2회부터 월1회 20만원 (최대 200만원)	1일 1회, 10만원	1일 1회, 10만원

